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153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34조(과태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0. 5. ~ 10. 25.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제1조(목적) ----------제34조제3항----------.</td></tr>
<tr><td>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td><td>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34조제3항----------.</td></tr>
<tr><td>[별표]</td><td>[별표]</td></tr>
<tr><td>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3">부과금액
(단위 : 만원)</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신 설></td><td></td><td></td><td></td><td></td></tr><tr><td>1.「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td><td>100</td><td>200</td><td>300</td></tr><tr><td>2.「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2호</td><td>100</td><td>200</td><td>300</td></tr></table></td><td>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3">부과금액
(단위 : 만원)</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td><td>1,000</td><td>2,000</td><td>3,000</td></tr><tr><td>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td><td>100</td><td>200</td><td>300</td></tr><tr><td>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td><td>100</td><td>200</td><td>300</td></tr></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박은경 (☎ 3153-9121)